

주식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 신고서 [] 허가신청서

담당	책임자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제 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신고 : 즉시 허가 : 15일
------	-----	-----	------	---------------------

외국 투자가	① 상호 또는 성명(영문) 개인 <input type="checkbox"/> 외국법인 <input type="checkbox"/> 국제경제협력기구 <input type="checkbox"/>	② 국적
	③ 주소 (영문) (전화번호 :)	

외국인 투자기업 (투자대상 국내기업)	④ 상호 또는 명칭	(국문)	⑤ 사업자등록번호(본사)
		(영문)	
	⑥ 주소	본사	(전화번호 :)
		주공장(주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금번 투자지역(신주 취득 및 출연의 경우)		(전화번호 :)	

⑦ 하려는(하고 있는) 사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세분류[신고(신청) 접수기관 기재란]

⑧ 자본금 (출연금)	기존 주 취득 시	원	
	그 외	취득(출연) 전	원
⑨ 경영상의 지배권 취득 []	⑩ 투자대상 국내 기업의 영 제5 조제1항제2호 나목 해당 여부 []	「방위사업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를 생산하는 기업	<input type="checkbox"/>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른 수출 허가 또는 승인 대상 물품을 생산하는 기업	<input type="checkbox"/>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가기밀로 취급되는 계약을 보유한 기업	<input type="checkbox"/>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	<input type="checkbox"/>

※ ⑨⑩에 모두 [v] 표시를 한 경우에는 국가안보위해 여부 판단에 필요한 서류 제출

⑪ 투자형태	[] 법인([] 신주, [] 기존주)	⑫ 투자목적	[] 공장 설립 · 증설
	[] 개인사업		[] 사업장 설립 · 증설
	[] 비영리법인 출연		[] 해당 기업(④번 기업) 인수합병
			[] 제3기업 인수합병

⑬ 주식등 양도자	상호 또는 성명(국문 또는 영문)(기존 주 취득 시에만 작성)	(전화번호 :)
--------------	------------------------------------	-----------

⑭ 출자목적물 (출연대상)	[] 현금, [] 자본재,	현금	원(USD)	상당)
	[] 주식, [] 부동산,	자본재	원(USD)	상당)
	[] 채권, [] 산업재산권 등	기타	원(USD)	상당)

⑮ 금번 외국인투자금액	취득총액 : 원(USD)	상당)
--------------	---------------	-----

⑯ 취득(할) 주식(지분) 의 내용	종류	1주(좌)당 액면가액(B)	1주(좌)당 취득가액(C)
	수량(A)	액면총액(A×B)	취득총액(A×C)

⑰ 취득 후 해당 외국투자자의 외국인투자금액 및 비율	취득총액 : 원(USD)	상당)	%
	액면총액 : 원		

⑱ 금번 투자에 따른 예상 근로자수	명
---------------------	---

⑲ 취득방법(법 제5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방식으로 주식등 취득 시에만 작성)
[] 전환사채, [] 신주인수권, [] 무상증자, [] 배당, [] 매입 · 상속 · 유증 · 증여, [] 합병 · 주식의 포괄적 교환 · 이전 및 회사분할, [] 기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1항 · 제5조제2항 또는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신고인 또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하나은행장 귀하

신고(신청)인 귀하

신고(허가) 번호 :

[V] 위의 신고를 마쳤음을 확인합니다. [] 위의 신청을 허가합니다. (허가조건 :)

하나은행장

은행
장인

년 월 일



주식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 신고서 [] 허가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제 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신고 : 즉시 허가 : 15일
------	-----	-----	------	---------------------

외국 투자가	① 상호 또는 성명(영문) 개인 <input type="checkbox"/> 외국법인 <input type="checkbox"/> 국제경제협력기구 <input type="checkbox"/>		② 국적
	③ 주소 (영문) (전화번호 :)		

외국인 투자기업 (투자대상 국내기업)	④ 상호 또는 명칭	(국문)	⑤ 사업자등록번호(본사)
		(영문)	
	⑥ 주소	본사	(전화번호 :)
		주공장(주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금번 투자지역(신주 취득 및 출연의 경우)		(전화번호 :)	

⑦ 하려는(하고 있는) 사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세분류[신고(신청) 접수기관 기재란]			

⑧ 자본금 (출연금)	기존 주 취득 시		원	
	그 외	취득(출연) 전	원	취득(출연) 후
⑨ 경영상의 지배권 취득 []	⑩ 투자대상 국내 기업의 영 제5 조제1항제2호 나목 해당 여부 []	「방위사업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를 생산하는 기업	<input type="checkbox"/>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른 수출 허가 또는 승인 대상 물품을 생산하는 기업	<input type="checkbox"/>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가기밀로 취급되는 계약을 보유한 기업	<input type="checkbox"/>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	<input type="checkbox"/>	
※ ⑨⑩에 모두 [V] 표시를 한 경우에는 국가안보위해 여부 판단에 필요한 서류 제출				

⑪ 투자형태	[] 법인([] 신주, [] 기존주)	⑫ 투자목적	[] 공장 설립 · 증설
	[] 개인사업		[] 사업장 설립 · 증설
	[] 비영리법인 출연		[] 해당 기업(④번 기업) 인수합병
			[] 제3기업 인수합병

⑬ 주식등 양도자	상호 또는 성명(국문 또는 영문)(기존 주 취득 시에만 작성)	(전화번호 :)
--------------	------------------------------------	-----------

⑭ 출자목적물 (출연대상)	[] 현금, [] 자본재,	현금	원(USD)	상당
	[] 주식, [] 부동산,	자본재	원(USD)	상당
	[] 채권, [] 산업재산권 등	기타	원(USD)	상당

⑮ 금번 외국인투자금액	취득총액 : 원(USD)	상당
--------------	---------------	----

⑯ 취득(할) 주식(지분) 의 내용	종류	1주(좌)당 액면가액(B)	1주(좌)당 취득가액(C)
	수량(A)	액면총액(A×B)	취득총액(A×C)

⑰ 취득 후 해당 외국투자자의 외국인투자금액 및 비율	취득총액 : 원(USD)	상당	%
	액면총액 : 원		

⑱ 금번 투자에 따른 예상 근로자수	명
---------------------	---

⑲ 취득방법(법 제5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방식으로 주식등 취득 시에만 작성)			
[] 전환사채, [] 신주인수권, [] 무상증자, [] 배당, [] 매입 · 상속 · 유증 · 증여, [] 합병 · 주식의 포괄적 교환 · 이전 및 회사분할, [] 기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1항 · 제5조제2항 또는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신고인 또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_____)

하나은행장 귀하

신고(신청)인 귀하

신고(허가) 번호 :

[V] 위의 신고를 마쳤음을 확인합니다. [] 위의 신청을 허가합니다. (허가조건 : _____)

하나은행장

은행
장인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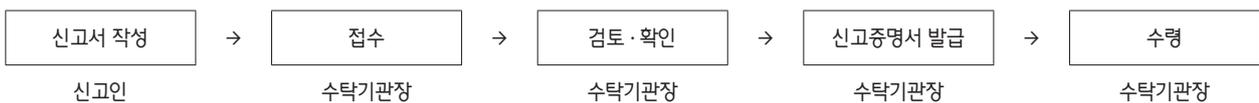


<p>첨부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법 제2조제1항제4호다목 또는 마목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려는 외국인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이 최초로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임원 파견 또는 선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총회, 이사회, 주주총회 등의 의사록 등을 의미합니다) 사본 1부(영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2)에 따라 주식등을 취득하는 양수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양수인 간의 특수 관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4. 출연하려는 비영리법인이 영 제2조제6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법 제2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출연하려는 비영리법인이 영 제2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법 제2조제1항제4호마목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6. 주식등의 취득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7. 영 제39조제2항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이 평가한 산업재산권 등의 가격평가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법 제2조제1항제8호라목의 출자목적물을 출자·출연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8. 지점·사무소 또는 법인의 청산 등에 따라 분배되고 남은 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법 제2조제1항제8호마목의 출자목적물을 출자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9. 법에 따라 도입된 차관이나 그 밖에 해외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법 제2조제1항제8호바목의 출자목적물을 출자·출연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0. 영 제2조제11항 각 호의 주식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법 제2조제1항제8호사목의 출자목적물을 출자·출연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주식 중 국내 비상장주식을 출자목적물로 출자출연 출연하는 경우에는 국내 공인기관의 주식가치평가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이에 해당하는 주식을 출자목적물로 출자하고 기존주식등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출자하는 주식 및 취득하는 주식 간의 교환조건(교환금액·교환비용 등)이 명시된 주식양수(양도) 계약서 사본 1부를 함께 제출합니다. 11. 출자·출연하려는 부동산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신고필증 사본 1부 (법 제2조제1항제8호아목의 출자목적물을 출자·출연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2. 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주식등과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법 제2조제1항제8호자목 및 영 제2조제12항의 출자목적물을 출자·출연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3. ㉠에 모두 [v] 표시를 한 경우 국가안보위해 여부 판단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필요시 국가안보위해 여부 판단에 필요한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신청인(외국투자자) 현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사결정권한이 규정된 내부규정(정관 등), 지배구조[주주구성(성명, 국적 포함), 지분율, 계열회사 현황 등] 2) 재무제표, 감사보고서(감사보고서가 없는 경우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 등) 3) 사업보고서(사업내용, 생산제품 및 기술보유, 연구인력, 제품·기술의 내용 및 수준, 생산공정 등) 4) 외국정부의 보유지분(국부펀드·공공기관 등 포함), 외국정부가 보유한 직간접적인 권리 내용 나. 투자대상기업(국내기업) 현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사결정권한이 규정된 내부규정(정관 등), 지배구조[주주구성(성명, 국적 포함), 지분율, 계열회사 현황 등] 2) 재무제표, 감사보고서(감사보고서가 없는 경우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 등) 3) 사업보고서(사업내용, 관련 시장 규모와 경쟁력, 생산제품 및 기술·공정 개요) 4) 「방위사업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생산 내역,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른 전략물자 생산 내역,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기밀 계약 목록,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보유 내역 다. 투자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수합병 등과 관련된 계약서 또는 계획서, 금번 외국인투자로 변경되는 사항(지배구조, 외국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의 범위·내용), 외국인투자의 자금 출처 및 증빙서류 2) 투자계획에 따른 기술·물품·용역 등 제공조건 및 방법, 기술·사이버 보안대책 마련 여부 등 라. 그 밖에 수탁기관장이 국가안보위해 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p>수수료 없음</p>
-------------	--	---------------

유의사항

이 신고증명서(허가증명서)는 외국인투자자금의 도착을 확인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고(신청)인은 신고 또는 신청과 관련하여 서류 미제출, 거짓 서류를 제출하거나 기재사항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작성방법

- ①~③란에서 '외국투자자'란 법에 따라 주식등을 소유하게 될 외국인(개인 또는 법인)으로 상호 또는 성명, 국적, 주소를 기입하되, 상호 또는 성명과 주소는 반드시 영문으로 적습니다. 외국투자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모두 적습니다.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국제경제협력기구의 경우 '국적'은 공란으로 남겨둡니다.
- ④·⑤란은 외국투자자가 출자(또는 출연)하려는 기업(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합니다) 또는 취득하려는 주식등을 발행한 국내기업의 '상호 또는 명칭'을 국문과 영문으로 적고, '사업자등록번호'(설립 중인 법인은 미정 표기)는 본사를 기준으로 적습니다.
- ⑥란에서 주소는 '본사'와 '주공장(또는 주사업장)'으로 구분하여 적되, 제조업인 경우에는 주된 공장의 소재지 주소를 적고, 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연구소를 포함합니다)의 주소를 적습니다. '금번 투자지역'은 신주 취득(또는 출연)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만 작성하며 특정 투자지역의 "도로명" 또는 "읍·면·동" 단위까지의 주소를 적되, 특정 투자지역이 없는 경우 본사의 주소를 적습니다.
- ⑦란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려는 사업명(또는 주식등 발행 기업이 현재 하고 있는 사업명)을 적고, 복수의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요 사업 순으로 4개까지만 사업명을 적습니다.



작성방법

- ⑧란의 '자본금(또는 출연금)'은 신주등 취득(또는 출연)의 경우 외국인투자 전과 후의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전체 주식등의 액면총액(또는 출연금 총액)을 원화로 원단위까지 적습니다. 만일 주식등 발행 기업의 납입자본금과 주식등의 액면총액(주식수×1주(좌)당 액면가액)이 다른 경우에는 후자를 적고 전자는 부기합니다.
- ⑨·⑩란은 ⑪란의 '투자형태'가 '법인(기존 주)'인 경우에만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표시합니다.
- ⑨란의 '경영상의 지배권 취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V]표시를 합니다.
1. 기업(기업의 특정사업 부분을 분리하여 신규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식등을 매매, 기업간의 교환·합병, 담보권의 실행, 대물변제의 수령 그 밖의 방식에 따라 인수하려는 경우로서 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와 합하여 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50 이상 소유하려는 경우(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주식 등의 최대소유자가 되면서 외국인이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기업의 임원선임이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가. 외국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 나. 외국인이 자신과 가목 또는 다목에 규정한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들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외국법인
 - 다. 외국인, 나목 또는 라목에 규정한 자의 사용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고용계약에 따른 피용인 및 그 개인의 금전이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를 말한다)
 - 라. 나목에 규정한 법인과 해당 외국인, 가목 및 다목에 규정한 자와 합하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 마. 해당 외국인과 합의 또는 계약 등에 따라 주식 등을 공동으로 취득 또는 처분하거나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외국인
 2. 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기업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양수·임차 또는 경영의 수임 방식에 따라 해당 기업을 사실상 경영하려는 경우

⑩란의 '투자대상 국내기업의 영 제5조제1항제2호 해당 여부'는 투자대상 국내기업이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물자를 생산하는 기업,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른 전략물자 등을 생산하는 기업,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국가기밀 계약을 보유한 기업,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V] 표시를 합니다.

⑪란은 주된 '투자형태'를 1개 항목만 선택합니다.

 - 법인(신주) : 외국투자자가 내국법인의 설립 또는 증자에 참여하는 경우
 - 법인(기존주) : 외국투자자가 내국법인이 이미 발행한 기존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 개인기업 : 외국투자자가 개인사업체에 신규 또는 추가 투자하는 경우
 - 비영리법인 출연 : 외국투자자가 내국비영리법인의 출연에 신규 또는 추가 참여하는 경우

⑫란은 주된 '투자목적'을 1개 항목만 선택합니다.

 - 공장 설립·중설: 제조업(제조업과 비제조업을 함께 경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경영하는 기업이 외국인투자 자금을 시설에 투자하거나 단순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사업장 설립·중설: 비제조업을 경영하는 기업이 외국인투자 자금을 시설에 투자하거나 단순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외국인투자기업 인수합병 : 외국인투자 자금으로 해당 기업(④번 기업)의 지분등을 인수하여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경우
 - 제3기업 인수합병: 외국인투자 자금으로 투자대상 국내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의 지분등을 인수하여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경우

⑬란의 '주식등의 양도자'(개인 또는 법인)는 외국투자자가 기존 주식등의 취득으로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상호 또는 성명을 국문(또는 영문)으로 적고 양도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양도 규모 순으로 대표적인 양도자 및 전체 양도자 수를 알아볼 수 있도록 적습니다. (예시: 홍길동 외 2명)

⑭란은 '출자목적물(또는 출연대상)'의 형태를 구분하여, 출자목적물(또는 출연대상)별로 그 취득가액을 적고, 주식·부동산·채권·산업재산권 등은 해당 란에 [V]표시하고, 기타 항목에 취득가액을 적습니다.

※ 유의사항: 출자목적물 중에서 채권의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8호바마에 따른 차관이나 그 밖에 해외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현물출자하는 경우만을 말합니다.

⑮란은 금번에 외국투자자가 출자(또는 출연)하는 '취득총액'을 원화와 미달러 상당액(미화는 투자신고 당시의 환율로 계상합니다)으로 기재하고, 외국투자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투자가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유의사항: 주식 등을 양수하는 자가 외국인(개인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⑮란의 '취득총액'은 ⑬란의 외국인이 양도할 주식(지분)의 내용(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에 따른 외국인투자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⑮란의 양도·양수계약으로 인한 취득총액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⑯란은 ⑮란의 취득총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⑯란은 ①란의 외국투자자가 취득할 주식등의 내용(비영리법인에 출연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을 적되, '취득총액'은 ⑮란의 취득총액과 일치해야 하며, 취득액이 외화인 경우에는 원화로 환산하여 적고, 외국투자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투자가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⑰란은 ①란의 외국투자자가 ④란의 외국인투자기업(또는 주식등 발행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금액 및 비율의 내용을 적되, '취득총액'은 ①란의 외국투자자가 기존에 투자한 취득총액과 ⑯란의 취득총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액면총액'(비영리법인에 출연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은 ①란의 외국투자자가 기존에 투자한 액면총액과 ⑯란의 액면총액의 합계를 적고, 비율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등(또는 전체 출연금)에 대한 ①란의 외국투자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의 비율(또는 외국투자자의 출연비율)을 적습니다. 외국투자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투자가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⑱란은 이번 투자에 따라 신규 고용이 예상되는 상시 근로자 수를 적습니다.

⑲란은 법 제5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식등의 취득사유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 (참고) 필요시 별지를 첨부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